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등〉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5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단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

4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제1호의3·제6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등(안 제4조제2항 등)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외에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통합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원 해임사유에도 명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생략) ②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u>委員은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u>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 地方法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2人을 포함한 3人과 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3人을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③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法官·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6人을 市·道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다만, 政黨이 추천하는 委員은 選舉期間開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u>위원은</u> ----- ----- ----- ----- ----- -----. ③----- -----<u>거주하는 사람</u> <u>중에서</u>----- ----- ----- ----- -----.

始日(委託選舉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후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4人을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다만, 邑·面의 區域안에 軍人을 제외한 選舉權者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選舉權者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教育公務員 이외의 公務員은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⑦ ~ ⑬ (생략)

<신설>

-----.

④-----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各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解任・解囑 또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3. 정당의 당원인 사람

4.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5.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추천후보자(「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로 등록되었던 사람

6. 과거 3년 이내에 정당 및 정당추천후보자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현행과 같음)

1의2.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한 때

1의3. 정당 및 정당추천후보자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하

2. ~ 5. (생략) <u><신설></u>	<u>거나 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한 때. 이 경우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2. ~ 5. (현행과 같음) <u>6. 제4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u> 부 칙 제1조(시행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해임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조제1호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해당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등에 해당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함.

<헌행법에 따른 위원의 해임사유>

1. 정당 가입, 정치 관여
2. 탄핵결정으로 파면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시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 시, 추천정당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경우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¹⁾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한 경우

그런데,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육공무원은 제외)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개별규정으로만 규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외에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통합하여 별도의 조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현행	개정안
결격사유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자	1. 좌동
	2. 정당원	2. 좌동
	3. 공무원(법관, 법원공무원, 교육 공무원 제외)	3. 좌동
	신설	4. 과거 3년 이내 정당원
	신설	5. 과거 5년 이내 정당추천후보자
	신설	6. 과거 3년 이내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 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임사유	1. 정당 가입, 정치 관여	1. 좌동
	신설	1의2.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
	신설	1의3.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 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

	현행	개정안
해임사유	2. 탄핵결정으로 파면	2. 좌동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시	3. 좌동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 시, 추천정당이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국회의원선거권 없음 발견	4. 좌동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 시	5. 좌동
	신설	6. 공무원(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이거나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결격사유로 인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이 현행보다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공무원(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이 아닌 경우 위원 위촉에 제한이 없는데, 개정안의 경우 과거 3년 이내 정당원이었던 경우 등 현행보다 결격사유가 한층 확대되게 됨.

이와 같은 결격사유 확대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위원 위촉 전 일정기간 정당원이었거나 정치에 관여했다는 사유로 위원 위촉이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의 취지²⁾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제한이 될 소지는 없는지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해임사유는 기존의 해임사유 및 결격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임.

개정안에서 추가되는 해임사유인 정당추천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관계자 활동 등을 보면 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의 당원 중에서 추천되고,³⁾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국 현행 법에 따른 해임사유인 정치 관여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2)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 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는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3)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위원 결격사유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이 되거나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를 해임사유로 추가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현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제9조4)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5)에 따라 위원 해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해임사유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입법에 따른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필요성 측면과 공무담임권 제한 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나,

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5)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실제 정치활동의 내용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과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선거대책기구의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여 개인의 공무담임권, 정당 가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⁶⁾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하는 경우와는 달리 선거대책기구의 자문 또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등록 또는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결격사유별 제한기간과 범위,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6)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위헌확인 헌재결정례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2020. 3. 24. 신설)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7. 18. 2021헌마460 결정)